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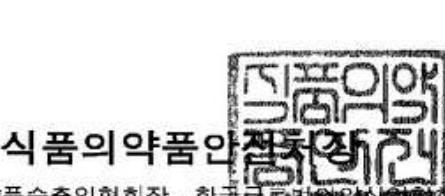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공포 알림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하는 대상 마약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시행 2024.6.14.)이 2024. 5. 28. 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5.28.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1부. 끝.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제약환경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방문의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정현철 전결 2024. 5. 28.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9375 (2024. 5. 2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 mfds.go.kr
점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502-604-7992 / whgdkgo@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